

【제 1299 호】



2016년 8월 16일 (화)

고양시보

차 례

입법예고

고양시 공고 제2016-1265호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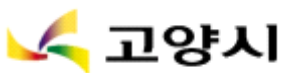
고 시

고양시 고시 제2016-208호 한국국제전시장 1단계 특별계획구역(특6,LL)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 계획)결정(변경) 정정고시 24

공 고

고양시 공고 제2016-1268호 도시계획시설도로 : 소로2-445호선, 소로2-449호선(화전취락)사업 공사 완료 공고 34

고양시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16-169호 운행정지명령 자동차 공고 35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6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개정,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에서 전파된 개선과제를 반영하여 규제 완화차원에서 용도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완화 및 관련 법령 인용 조문 등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가.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을 규정함.(안 제12조)
- 나.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내 건축규제를 완화함.(안 제51조제3항)
- 다. 자연녹지지역 내 학교의 건폐율을 완화함.(안 제59조제5항)
- 라.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에서의 건폐율을 완화함.(안 제60조의4)
- 마. 일반주거지역 내 떡·빵 제조업의 공장 설치를 허용함.
(안 별표 3 제11호, 안 별표 4 제9호, 안 별표 5 제9호)
- 바.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입지 규제를 완화함.(안 별표 19 제4호)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6년 9월 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도시계획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주교동)
- 전 화 :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 (031-8075-3076)
- 팩 스 : 031-8075-493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①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② 시장이 발행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이자율은 채권발생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이상의 금리로 한다.

제14조의2 제2항제3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9조의2 중 “「고양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라 실시하는 “실무종합심의회” 운영 규정”을 “「고양시 민원 처리 규정」 제9조에 따른 “민원실무심의회” 운영 규정”으로 한다.

제34조제6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17호까지로 하고, 종전 제17호를 제6호로 한다.

제45조 제목 “(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을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으로 한다.

제46조 제목 “(부속건축물의 제한)”을 “(미관지구 안에서의 부속건축물의 제한)”으로 한다.

제47조제3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14호까지로 하고, 종전 제14호를 제3호로 한다.

제48조 제목 “(공용시설보호구역안에서의 건축물)” 을 “(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물)” 로 하고, 각 호의 외의 부분 중 “공용시설보호구역” 을 “공용시설보호지구” 로 한다.

제48조제6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제9호부터 제16호까지로 하고, 종전 제15호 및 제16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종전 제14호를 제4호로 한다.

제49조 각 호의 외의 부분 중 “영 77조제1항에 따라 영 제31조제2항제5호다목” 을 “영 77조제1항에 따라” 로 한다.

제49조제7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제10호부터 제15호까지로 하고, 종전 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제8호 및 제9호로 하며,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종전 제13호를 제4호로 한다.

제5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1조(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9조제1항에 따라 지구단위 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개발진흥지구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법 제81조 및 영 제8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정한다)

② 영 제79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

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③ 영 제79조제3항에 따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계획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 대상이 아닐 것

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

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

2. 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

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제5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84조제3항”을 “영 제84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라목”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을 “「산업입

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 및 나목” 으로 한다.

2. 개발진흥지구 : 다음의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 40퍼센트 이하

나. 자연녹지지역에서 지정된 경우 : 30퍼센트 이하

제58조 중 “영 제84조제4항” 을 “영 제84조제5항” 으로 한다.

제59조제1항 중 “영 제84조제5항제1호” 를 “영 제84조제6항제1호”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84조제5항제2호” 를 “영 제84조제6항2호”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영 제84조제5항제4호” 를 “영 제84조제6항4호” 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영 제84조제5항제5호” 를 “영 제84조제6항5호” 로 한다.

제59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2.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제60조 중 “영 제84조제6항” 을 “영 제84조제7항” 으로 한다.

제60조의2 중 “영 제84조제8항” 을 “영 제84조제9항” 으로 한다.

제60조의4 및 제60조의5를 각각 제60조의5 및 제60조의6으로 하고, 제6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의4(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에서의 건폐율 완화) 법 제77조제5항 및 영 제84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지역 내에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장의 경우에는 성장관리방안에 영 제56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

1. 계획관리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 : 30퍼센트 이하

제61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과 기숙사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대 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부지 외에 건설하는 기숙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다.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

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제61조제6항 중 “「문화재보호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를 “「문화재보호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로 한다.

제6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93조제5항의 단서” 를 “영 제93조제6항” 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 을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 부터 3종사업장까지” 로 한다.

제77조제2항 중 “시간제계약직공무원” 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으로 한다.

제7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6호” 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9호” 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4조” 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로 한다.

별표 3 제11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제12호부터 제18호까지로 하며,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떡 제조업 및 빵 제조업(이에 딸린 과장 제조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장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일 것

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인 경우에는 악취방지시설 등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것

다. 제10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라. 시장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근의 주거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이 적다고 인정하였을 것

별표 4 제9호 및 별표 5 제9호 중 “영 별표 4 제2호차목의 공장” 을 각

각 “영 별표 4 제2호차목 및 카목의 공장” 으로 한다.

별표 18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 및 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등이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내에서 교육시설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별표 19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레미콘, 아스콘 공장(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시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은 제외한다)

별표 25 중 “(제59조의2 관련)” 을 “(제60조의2 관련)” 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과		도시계획과
입안자	담당관 성명	도시계획과장 위관현
	팀장 성명	도시계획팀장 이재학
	담당자 성명·전화	김화영 (031-8075-3076)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12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u>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 47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시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p>	<p><u>제12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u> ①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② 시장이 발행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이자율은 채권발생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이상의 금리로 한다.</p>
<p><u>제14조의2(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 등)</u> ① (생략) ② 영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및 이에 상응하는 부지가액의 산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략) 3. 부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시장이 추천한 감정평가업자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감정평가에 필요한 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하여야 한다.</p>	<p><u>제14조의2(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 등)</u>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p>
<p><u>제29조의2(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u> 영 제59조의2 제4항에 따른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고양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라 실시하는 “<u>실무종합심의회</u>” 운영 규정에 따른다.</p>	<p><u>제29조의2(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u></p> <p>..... 「고양시 민원 처리 규정」 제9조에 따른 “<u>민원실무심의회</u>” 운영 규정.....</p>
<p><u>제34조(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u>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수변경관지구안</p>	<p><u>제34조(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u></p>

현행	개정안
<p>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p> <p>1. ~ 5. (생략) <u><현행 제17호에서 이동></u></p> <p>6. ~ 16. (생략)</p> <p>17. (생략)</p> <p><u>제45조(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u> (생략)</p> <p><u>제46조(부속건축물의 제한)</u> ① ~ ② (생략)</p> <p><u>제47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u>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p> <p>1. ~ 2. (생략) <u><현행 제14호에서 이동></u></p> <p>3. ~ 13. (생략)</p> <p>14. (생략)</p> <p>15. (생략)</p> <p><u>제48조(공용시설보호구역안에서의 건축물)</u>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u>공용시설보호구역</u>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p> <p>1. ~ 3. (생략) <u><현행 제14호에서 이동></u></p>	<p>.....</p> <p>.....</p> <p>1. ~ 5. (현행과 같음)</p> <p>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u>운수시설</u></p> <p>7. ~ 17. (현행 제6호부터 제16호까지와 같음) <u><제6호로 이동></u></p> <p><u>제45조(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u> (현행과 같음)</p> <p><u>제46조(미관지구 안에서의 부속건축물의 제한)</u> ① ~ ② (현행과 같음)</p> <p><u>제47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u></p> <p>1. ~ 2. (현행과 같음)</p> <p>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u>운수시설</u></p> <p>4. ~ 14. (현행 제3호부터 제13호까지와 같음) <u><제3호로 이동></u></p> <p>15. (현행과 같음)</p> <p><u>제48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물)</u> <u>공용시설보호지구</u></p> <p>1. ~ 3. (현행과 같음)</p> <p>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u>종교시설</u></p>

현행	개정안
<p>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p> <p>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p> <p><현행 제15호에서 이동></p> <p><현행 제16호에서 이동></p> <p>6. ~ 13. (생략)</p> <p>14. (생략)</p> <p>15. (생략)</p> <p>16. (생략)</p> <p>제49조(항만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영 제31조 제2항제5호다목의 항만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p> <p>1. ~ 3. (생략)</p> <p><현행 제13호에서 이동></p> <p>4. ~ 6. (생략)</p> <p><현행 제14호에서 이동></p> <p><현행 제15호에서 이동></p> <p>7. ~ 12. (생략)</p> <p>13. (생략)</p> <p>14. (생략)</p> <p>15. (생략)</p>	<p>5. (현행 제4호와 같음)</p> <p>6. (현행 제5호와 같음)</p> <p>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u>노유자시설</u></p> <p>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u>수련시설</u></p> <p>9. ~ 16. (현행 제6호부터 제13호까지와 같음)</p> <p><제4호로 이동></p> <p><제7호로 이동></p> <p><제8호로 이동></p> <p>제49조(항만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p> <p>.....</p> <p>.....</p> <p>1. ~ 3. (현행과 같음)</p> <p>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u>종교시설</u></p> <p>5. ~ 7. (현행 제4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p> <p>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u>공장</u></p> <p>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u>동물 및 식물관련시설</u></p> <p>10. ~ 15. (현행 제7호부터 제12호까지와 같음)</p> <p><제4호로 이동></p> <p><제8호로 이동></p> <p><제9호로 이동></p>

현 행	개 정 안
<p>제51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에 따라 개발진흥지구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p> <p>1. ~ 2. (생략)</p> <p><신 설></p> <p><신 설></p>	<p>제51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9조제1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개발진흥지구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p> <p>1. ~ 2. (현행과 같음)</p> <p>② 영 제79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p> <p>③ 영 제79조제3항에 따라 산업·유통 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p> <p>1.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p> <p>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 대상이 아닐 것</p> <p>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이</p>

현행	개정안
<p>제57조(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p>없을 것</p> <p>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p> <p>2. 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p> <p>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p> <p>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p> <p>제57조(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p> <p>.....</p> <p>.....</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개발진흥지구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

현행	개정안
<p>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버섯재배사와 콩나물재배사는 제외한다.</p> <p><u>제60조의2(도시계획시설의 건폐율) 영 제84조제8항</u>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 공원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의 비율 이하로 한다.</p> <p>1. ~ 2. (생략)</p>	<p>.....</p> <p>.....</p> <p>.....</p> <p>.....</p> <p>.....</p> <p>.....</p> <p><u>제60조의2(도시계획시설의 건폐율) 영 제84조제9항</u>.....</p> <p>.....</p> <p>.....</p> <p>1. ~ 2. (현행과 같음)</p>
<p><u><신설></u></p>	<p><u>제60조의4(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에서의 건폐율 완화) 법 제77조제5항 및 영 제84조의3</u>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지역 내에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장의 경우에는 성장관리방안에 영 제56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p> <p>1. 계획관리지역: 50퍼센트 이하</p> <p>2. 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 30퍼센트 이하</p>
<p>제60조의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건폐율의 완화) (생략)</p>	<p>제60조의5(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건폐율의 완화) (현행 제60조의4와 같음)</p>
<p>제60조의5(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생략)</p>	<p>제60조의6(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현행 제60조의5와 같음)</p>
<p>제61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 ④ (생략)</p> <p>⑤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p>	<p>제61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과 기</p>

현행	개정안
<p>에도 불구하고 주거지역안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임대주택(임대주택법령에 따라 임대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2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이 의무화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p>	<p>숙사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대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부지 외에 건설하는 기숙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영 제85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 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다.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 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p>⑥ 「문화재보호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용적률은 해당 용도지역 등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p> <p>⑦ (생략)</p>	<p>⑥ 「문화재보호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p> <p>.....</p> <p>.....</p> <p>.....</p> <p>⑦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별표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3호 관련)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4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4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p> <p>1. ~ 10. (생략)</p> <p><신설></p> <p>11. ~ 17. (생략)</p> <p>[별표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4호관련)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5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5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p> <p>1. ~ 8. (생략)</p>	<p>[별표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3호 관련)</p> <p>1. ~ 10. (현행과 같음)</p> <p>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떡 제조업 및 빵 제조업(이에 딸린 과장 제조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장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것</p> <p>가.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일 것</p> <p>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인 경우에는 악취방지시설 등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것</p> <p>다. 제10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p> <p>라. 시장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근의 주거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이 적다고 인정하였을 것.</p> <p>12. ~ 18. (현행 제11호부터 제17호까지와 같음)</p> <p>[별표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4호관련)</p> <p>1. ~ 8.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9. 영 별표 4 제2호차목의 공장</p> <p>10. ~ 16. (생략)</p> <p>[별표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5호관련)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6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6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p> <p>1. ~ 8. (생략)</p> <p>9. 영 별표 4 제2호차목의 공장</p> <p>10. ~ 16. (생략)</p> <p>[별표 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18호 관련) 생산관리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19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9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4층 이하의 건축물에만 해당된다)</p> <p>1. ~ 4. (생략)</p> <p>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u>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 및 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만 해당된다)</u></p> <p>6. ~ 15. (생략)</p>	<p>9. 영 별표 4 제2호차목의 공장 및 카목의 공장</p> <p>10. ~ 16. (현행과 같음)</p> <p>[별표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5호관련)</p> <p>1. ~ 8. (현행과 같음)</p> <p>9. 영 별표 4 제2호차목의 공장 및 카목의 공장</p> <p>10. ~ 16. (현행과 같음)</p> <p>[별표 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18호 관련)</p> <p>1. ~ 4. (현행과 같음)</p> <p>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u>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 및 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등이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내에서 교육시설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u></p> <p>6. ~ 15.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별표 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19호 관련) 계획관리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20 제1 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20 제 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 축할 수 없다.</p> <p>1. ~ 3. (생략)</p> <p>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 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것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외의 지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되는 경우(영 별표 20 제1호자목에 해당하 는 것은 제외한다)</p> <p>(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 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 지역에 설치되는 것으로서 영 별표 20 제1호자목(7)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 우</p> <p>(3) 레미콘, 아스콘 공장(다만,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으로 고양시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은 제외한다.)</p> <p>5. (생략)</p> <p>[별표 25] 도시계획시설 중 공원 안의 건축물의 건폐율(제59조의2 관련)</p> <p>1. ~ 2. (생략)</p>	<p>[별표 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19호 관련)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 장 중 레미콘, 아스콘 공장(다만, 「공 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 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으로 시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 콘 공장은 제외한다)</p> <p>5. (현행과 같음)</p> <p>[별표 25] 도시계획시설 중 공원 안의 건축물의 건폐율(제60조의2 관련)</p> <p>1. ~ 2. (현행과 같음)</p>

한국국제전시장 1단계 특별계획구역(특6,L1)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정정고시

한국국제전시장 1단계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6(L1)블록(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1050-185번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기 결정(변경)된 사항 중 일부 누락된 지침내용(입체공공보행통로)이 있어 정정고시 합니다.

2016. 8. 16.

고양시 장

□ 지구단위계획(특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
가. 용도지역·지구 및 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 없음

(1)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역명	용도지역	면적(m ²)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한국국제전시장 특별계획구역 특6(L1)	일반상업지역	19,553.4	-	19,553.4	

(2) 용도지구 결정조서 : 해당사항 없음

(3)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구역명	위치	면적(m ²)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한국국제전시장 특별계획구역 특6(L1)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1050-185	19,553.4	-	19,553.4	

나.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도면번호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가구 및 획지번호	면적(m ²)	가구 및 획지번호	면적(m ²)	
L1	L1	19,363.7	L1	19,363.7	특6

다.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1) 건축물의 용도 결정(변경)조서

■ 전시지원시설 및 활성화시설(특별계획구역)

구분	계획지침
지정용도	□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 또는 상점(60% 이상)
허용용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내지 마목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라목 내지 하목(학원, 교습소, 실내낚시터 제외), 너목, 러목(노래연습장에 한함)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가목(서어커스장은 제외), 나목 (마권장외발매소 및 마권전화 투표소 제외), 라목에 해당하는 것 □ 운동시설 중 가목(실내낚시터 제외), 다목 □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금융업소, 사무소에 한함)

주1) 면적산정기준은 지상층 연면적 중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

주2) 허용용도에는 해당구역의 지정용도를 포함(면적비율 적용안함)

주3) 지정용도 및 허용용도에 비율이 정해진 경우(ex : 업무시설 50% 이상 등)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관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지상층 연면적의 5%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음.

(2)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위치	구분	결정내용(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L1 (대화동 1050-185)	건폐율(%)	60% 이하	60.5% 이하	
	용적률(%)	500% 이하	500% 이하	
	최고높이(m)	60m(10층) 이하	60m(7층) 이하	

(3) 건축물의 배치 · 건축선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분	결정내용(지침)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방향성 : 국제전시장부지를 제외한 구역내 건축물의 벽면은 접한 전면가로 (폭20m 이상)의 방향과 일치하게 할 것을 권장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은 대로1-2호선(중로 3-76호선) 및 대로 3-46호선변의 전면가로의 방향과 일치되게 배치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선 : 건축한계선, 벽면한계선 등이 지정된 대지에는 그에 적합하도록 건축물을 설치하여야 함(결정도 참조) -건축한계선 : 가로에 개방감을 확보하기 위한 건축물 후퇴선으로 그 선을 넘어서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돌출할 수 없음 -벽면한계선 : 벽면한계선이 지정된 대지에서는 건축물의 주벽면 또는 특정층의 벽면이 한계선을 넘어서 건축할 수 없으며, 벽면한계선의 적용에 있어 특정층이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1층 벽면을 그 대상으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한계선(결정도 참조) -대상지 주변 도로변 기 지정된 건축한계선을 준수하여 가로의 개방감 확보 및 건축물 외관 질서를 유지하는 배치 계획 수립 ·대로3-46호선 변 : 4m ·중로3-76호선 변 : 3m -건축한계선의 운용에 따라 건축한계선을 넘어서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돌출되지 아니하도록 설계 -벽면한계선 : 해당사항 없음
형태 및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형태 -탑상형 : 주요간선변 및 각각부 필지내에서 도시이미지를 제고하고 충분한 오픈스페이스가 확보가능하도록 건축하여야 함 -고층부 탑상형 : 주요간선가로변 필지에 도시이미지를 제고하고 고층부의 개방감 확보가 가능하도록 건축물의 5층 이상부분에 대하여 건폐율 40%이하로 건축하여야 함 -저층부(5층이하) : 활발한 가로활동의 유도를 위하여 규모, 디테일의 측면에서 휴먼스케일을 반영하도록 할 것 -고층부(6층이상) : 사업구역의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도록 유리 및 금속재료 등을 통한 미래지향적인 외관을 표현하도록 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형태 -저층부(5층이하) : 대상지 내부를 동서남북축으로 공공보행통로 및 공개공지 등의 배치로 활발한 가로활동을 유도하였으며, 디테일 측면에서 실 사용자들의 휴먼스케일을 최대한 반영한 형태 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조의 제한 -1층부 : 국제전시장부지를 제외한 구역내 건축물 중 2층부에 보행자데크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 1층부 층고는 4.5m 이상 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조의 제한 -판매시설의 2층부에 각동과 연결하는 보행자데크 설치 -1층부 층고는 4.5m 이상으로 계획

구분	결정내용(지침)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형태 및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층부 바닥높이 : 접한 보도 또는 도로와 높이를 맞추거나 10cm이상의 차이를 둘 수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층부 바닥높이 : 접한 보도 또는 도로와 높이를 10cm이상의 차이가 나지 않도록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벽처리(국제전시장부지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시벽 : 폭 20m 이상의 가로, 폭 15m 이상의 가로의 교차로, 보행자전용도로 및 공공보행통로와 면한 건축물의 벽면은 1층 전면벽면의 50%이상을 투시벽으로 하여야 함. 단, 허가권자가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셔터 : 폭 15m이상의 도로, 보행자전용도로 및 공공보행통로와 면한 건축물의 1층 셔터는 투시형으로 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벽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시벽 : 대로 3-46호선, 대로 1-2호선 및 공공보행통로와 면한 건축물의 벽면은 1층 전면 벽면의 50%이상을 투시형으로 조성(단, 허가권자가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셔터 : 대로 3-46호선, 대로 1-2호선 및 공공보행통로와 면한 건축물의 1층 셔터는 투시형으로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상처리 : 국제전시장부지를 제외한 옥상층은 설비가 노출되지 않아야 하며, 옥탑의 입면형태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옥상에는 반드시 옥상조경 또는 옥상정원을 설치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상처리 : 옥상층은 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옥상조경 또는 옥상정원을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색채 및 재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층부(6층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조색 : 채도 2이하, 명도 8이상 ■ 보조색 : 채도 4이하, 명도 6이상 ■ 강조색 : 제한없음 -저층부(5층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조색 및 보조색 : 채도 4이하, 명도 6이상 ■ 강조색 : 제한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색채 및 재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층부(5층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조색 및 보조색 : 채도 4이하, 명도 6이상 ■ 강조색 : 제한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m 폭이상의 도로에 위치하는 건축물의 1층 전면의 경우 벽면의 50%이상을 투시형으로 조성하여야 함 -1층 전면개구부에 셔터를 설치할 경우 투시형으로 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m 폭이상의 도로에 위치하는 건축물의 1층 전면의 경우 벽면의 50%이상을 투시형으로 조성 -1층 전면개구부에 셔터를 설치할 경우 투시형으로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행자데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전시장부지를 제외한 구역내 건축물은 2층부에 보행자데크를 설치할 수 있음 -보행자데크는 간선도로 혹은 도로와 면하는 부분에 설치되어야 하며 동일한 블록내의 인접건축물과 연결되어야함 -조성방안에 관해서는 인허가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행자데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판매시설의 2층부에 각동과 연결하는 보행자데크 설치

라. 대지내 공지 및 동선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대지내 공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구분	결정내용(지침)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전면 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면공지 -대지경계선과 건축한계선 사이의 공지를 전면공지로 조성 -전면공지가 인도와 접한 경우 동일한 포장재료 및 패턴을 사용하여야 하며, 보행에 장애가 되는 시설물의 설치를 금지하며, 특히 간선가로변 필지의 경우 보행자들을 위한 대기공간 및 휴식공간을 조성하여야 함 -전면공지가 차도와 접하는 경우 전면차도와 단차를 없애고 동일한 포장재료 사용으로 차량통행의 장애요소를 제거하여야 함 -전면공지와 도로(보행자도로포함)와의 경계부는 단차 15cm 미만으로 설치하며 식재기준에 따라 조성(4m 이상 전면공지)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면공지(결정도 참조) -대로 1-2호선(중로 3-76)호선 변기 지정된 건축한계선 3m 후퇴부분을 전면공지로 조성 -대로 3-46호선 변기 지정된 건축한계선 4m 후퇴부분을 전면공지로 조성 -전면공지는 인도와 동일한 포장재료 및 패턴 사용을 유도하고 보행에 장애가 되는 시설물 설치를 금지하며, 보행공간 확대를 유도하고, 보행자들을 위한 대기공간 및 휴식공간으로 조성 -전면공지와 도로(보행자도로포함)와의 경계부는 단차 15cm 미만으로 설치하며 식재기준에 따라 조성
공개 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개공지(결정도 참조) -건축법 제67조에 의해 일반대중에게 상시 개방되어야 함 -위치 : 결정도상의 표시된 곳에 공개공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설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개공지의 위치가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접한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나 각각부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개공지의 형태는 최소폭 5m 이상으로 하며, 최소면적은 45㎡이상으로 설치시 과도한 세장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장변 및 단변 중 일반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장변을 도로측에 접하게 함 ·설치형태는 일반적 형태, 피로티 구조, 쌈지공원(침상형)등 다양한 형태로 조성가능 ·피로티 구조로 설치시 유효높이 6.0m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며, 쌈지공원 형태로 조성가능 -조성기준 : 관련법규정에 의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개공지(결정도 참조) -건축법 제67조에 의해 일반대중에게 상시 개방 -위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로 3-46호선과 대로 1-2호선(중로 3-46호선) 각각부에 1개소 설치 ·킨텍스 근린공원과 호수공원의 보행결절점에 1개소 설치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개공지의 형태는 최소폭 5m 이상으로 하며, 최소면적은 45㎡이상으로 설치 ·일반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장변을 도로측에 접하게 계획 -조성기준 : 관련법규정에 의함

구분	결정내용(지침)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대지 안의 조경	<p>□대지안의 조경</p> <p>-차폐조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지내 화물적재, 쓰레기 하치장 등이 건물 혹은 구조물에 의해 차폐되지 않고 전면도로에 노출될 경우, 전면도로와 화물적재, 쓰레기 하치장 등의 사이에 3m 이상의 폭으로 높이 1m 이상의 관목을 m²당 0.2분 이상 밀식식재를 하여야 함 ·폭 20m 이상의 도로 및 보행공간에 면하는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차폐식재를 하여야 함 <p>가.폭3m 이상 및 높이 1.5m 미만의 식수대를 설치</p> <p>나.식수대에는 관목을 밀식식재하고 5m 이하의 간격으로 교목 식재</p> <p>다.식수대는 분리설치할 수 있되 식수대간의 간격을 1m를 초과할 수 없음</p> <p>-식수기준의 완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물연면적이 1,000m² 미만인 건축물의 경우 법정식수 수목 중 교목본수 50%이내의 범위 에서 교목 1분당 관목 10분으로 대치가능 ·옥상조경의 경우, 교목식재를 지양하고 관목밀식을 위주로 식재 	<p>□대지안의 조경</p> <p>-차폐조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지내 화물적재, 쓰레기 하치장 등이 건물 혹은 구조물에 의해 차폐되지 않고 전면도로에 노출될 경우, 전면도로와 화물적재, 쓰레기 하치장 등의 사이에 3m 이상의 폭으로 높이 1m 이상의 관목을 m²당 0.2분 이상 밀식식재 하여야 함 ·폭 20m 이상의 도로 및 보행공간에 면하는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차폐식재를 하여야 함 <p>가.폭3m 이상 및 높이 1.5m 미만의 식수대를 설치</p> <p>나.식수대에는 관목을 밀식식재하고 5m 이하의 간격으로 교목 식재</p> <p>다.식수대는 분리설치할 수 있되 식수대간의 간격을 1m를 초과할 수 없음</p> <p>-식수기준의 완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물연면적이 1,000m² 미만인 건축물의 경우 법정식수 수목 중 교목본수 50%이내의 범위 에서 교목 1분당 관목 10분으로 대치가능 ·옥상조경의 경우, 교목식재를 지양하고 관목밀식을 위주로 식재

(2) 대지내 동선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누락지침내용 포함

구분	결정내용(지침)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대지내 동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보행통로 -대지안의 공지에 일반인이 보행통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대지 또는 건축물 내에 제공되는 통로로서, 결정도상에 표시된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성하도록 할 것 -대지내 통로에는 담장, 계단, 화단 등 차량 및 보행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장치물을 설치할 수 없으나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휴게시설, 문화환경조형물 등의 장치물을 결정권자와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음 -향후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방향성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위치 및 선형 일부 조정될 수 있음 -풍수해 방지를 위한 방풍 및 방우시설은 결정권자와 협의하여 설치 -접하는 보도와 단 차이를 두지 않을 것 -내구성 있는 재료로 포장하되, 장식포장을 권장 -차량동선과 교차시 보행우선구조로 조성 -차량동선과 공통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 면적을 조경면적에 산입 -공공보행통로에 대한 공공성이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도록 24시간 개방을 원칙으로 하되, 실내형의 경우 건물의 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결정권자와 협의하여 일정시간 폐쇄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보행통로(결정도 참조) -기 결정되어 지정된 위치에 폭원 15m 이상으로 조성(도면참조)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휴게시설, 문화환경조형물 등의 장치물을 설치 -대지내 통로에는 담장, 계단, 화단 등 차량 및 보행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장치물을 설치할 수 없으나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휴게시설, 문화환경조형물 등의 장치물을 결정권자와 협의하여 설치 -풍수해 방지를 위한 방풍 및 방우시설은 결정권자와 협의하여 설치 -접하는 보도와 단 차이를 두지 않도록 계획 -내구성 있는 재료로 포장 -차량동선과 교차하지 않도록 계획 -차량동선과 공통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 면적을 조경면적에 산입 -공공보행통로에 대한 공공성이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도록 24시간 개방

구분	결정내용(지침)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대지내 동선	<p>□ 입체공공보행통로* - 입체공공보행통로는 연접 필지간에 실내형 혹은 공중형태로 직접적 연결하여 보도가 아닌 건축물 내부를 통한 공공실내통로 형태로 조성하여야 함 - 입체공공보행통로는 지하보도를 통한 침상형 공지와 실내를 연결하거나 건축물간 공중입체횡단통로 형태를 기본원칙으로 하며 24시간 공공에 개방되어야 함 - 입체연결통로 · 인접된 획지간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입체(지상, 지하)연결통로를 결정권자와 협의하여 개설할 수 있음 - 지상입체연결보행통로 · 지상입체연결보행통로로 지정된 획지(C2, C4, L2-1)는 세부개발계획 또는 사업계획승인(건축심의 또는 허가 등)시 인접획지와의 연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음 · 지상입체연결보행통로로 계획된 획지는 지상입체연결보행통로가 계획되어야 하며, 폭 4m이상 권장 · 공공부지 통과구간은 24시간 개방토록 권장</p> <p>□ 주차차량동선(결정도 참조) - 폭 30m 이상의 도로변에서 차량출입 금지(원칙) - 개별필지의 주차 진출입은 연접도로 중 최하위도로에서 진출입 권장 - 단, 차량진입허용구간은 각 시설별 교통영향평가 심의로 변경될 경우는 각 시설별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에 따른다.</p>	<p>□ 입체공공보행통로* - 연접 필지간 보행자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실내형 혹은 공중형태로 지상 또는 지하에 입체공공보행통로를 개설할 수 있음 - 설치의 형태는 지하 또는 지상으로 할 수 있으며 연접 필지의 건축계획과 연동하여 통로의 입구를 설정하여야 함 - 원칙적으로 24시간 공공에 개방되어야 함 - 조성방안에 관해서는 인허가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함 - 일산신도시 주민들의 보행편의성을 위해 노래하는 분수대로 통하는 보행자육교와 대상지내 건물2층이 연결될 수 있도록 입체공공보행통로로 연결 할 수 있음 · 24시간 개방될 수 있도록 보행자육교와 연결되는 건물2층연결 부분에 수직동선을 설치하여 지상1층으로 보행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함</p> <p>□ 주차차량동선(결정도 참조) - 대로 3-46호선 변으로 차량 진출입 - 개별필지의 주차 진출입은 연접도로 중 최하위도로에서 진출입 권장 - 단, 차량진입허용구간은 각 시설별 교통영향평가 심의로 변경될 경우는 각 시설별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에 따름</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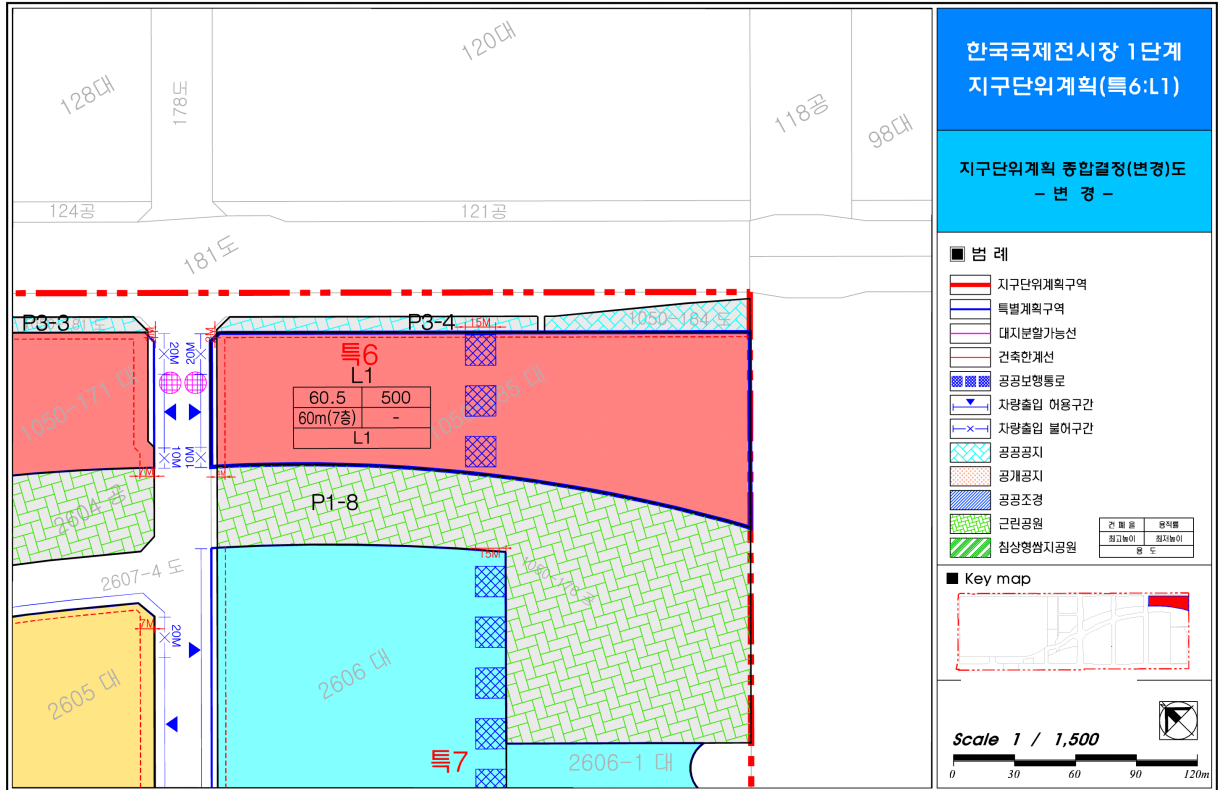
※ 입체공공보행통로 누락지침내용 포함

마.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결정내용(지침)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대지내 지상 주차장 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지내 지상주차장 조경 -지상주차장 설치시(20대 이상)지상주차장과 도로 사이 또는 대지내 보행자통로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조경 실시 -폭 1m 이상, 높이 0.3~0.6m의 식수대 설치 -수고 3m 이상, 수관폭 1.5m 이상 교목 : m²당 0.2본 이상 식재 -식수대의 분리시 폭은 1m 이하로 하며 차량출입구는 제외 -20대 이하 규모의 지상주차장 설치시 도로 또는 대지내 보행자통로의 경계선에는 위 기준에 따라 조경처리를 하거나 차량출입구 부분을 제외한 경계선에 1.5m 간격으로 단주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지내 지상주차장 조경 -대지내 지상주차장 설치계획 없음
옥상 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옥상조경 : 국제전시장부지를 제외한 모든 부지에 건축되는 건축물의 옥상조경은 소관목 위주로 조성하며 휴게시설 (벤치, 파고라 등)을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옥상조경 : 옥상조경은 소관목 위주로 조성하며 휴게시설(벤치, 파고라 등)을 설치
가로 경관 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로경관조경 : 보행자전용도로 및 도로변을 따라 교목을 열식하고 하부 식생으로 관목 등을 식재하여 가로경관을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로경관조경 : 보행자전용도로 및 도로변을 따라 교목을 열식하고 하부 식생으로 관목 등을 식재하여 가로경관을 향상
옥외 광고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옥외광고물 -건축물에 부착되는 옥외광고물은 불허 -옥외광고물 부착시는 별도의 조형물을 설치하여 모든 광고물을 통합하여 설치하여야 함 -광고물 관련규정(옥외광고물등 관리법, 동법시행령, 경기도 및 고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옥외광고물 -건축물에 부착되는 옥외광고물은 불허 -옥외광고물 부착시는 별도의 조형물을 설치하여 모든 광고물을 통합하여 설치하여야 함 -광고물 관련규정(옥외광고물등 관리법, 동법시행령, 경기도 및 고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함
조명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명계획 -옥외설치 미술장식품에 대한 보행자 관찰용 조명등 설치 -건축물을 비추는 조명등 설치 -공개공지에 대한 야간조명등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명계획 -옥외설치 미술장식품에 대한 보행자 관찰용 조명등 설치 -건축물을 비추는 조명등 설치 -공개공지에 대한 야간조명등 설치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 변경없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고양시 공고 제2016-1268호

도시계획시설[도로 : 소로2-445호선, 소로2-449호선(화전취락)]사업 공사완료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같은 법 제88조 규정에 따라 고양시 고시 제2015-283호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 사업시행자(연순미)가 시행한 도시계획시설(도로 : 소로2-445호선, 소로2-449호선)사업에 대하여 공사를 완료하였기에 같은 법 제98조(공사완료의 공고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사 완료 공고합니다.

2016. 8. 16.

고 양 시 장

○ 공사완료 내용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9-205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사업
- 명 칭 : 소로2-445호선, 소로2-449호선(화전취락)

다. 사업의 면적 및 또는 규모

구분	규 모				연장 (m)	면적 (㎡)	기점	종점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결정	소로	2	445	9.0	303		중로3-7 덕은동9-64	중로3-9 덕은동 9-18	
결정	소로	2	449	8.0	120		중로3-9 덕은동 9-3	소로덕1-157 덕은동 9-170	
금회시행	소로	2	445	9.0	90	931			
금회시행	소로	2	449	8.0	71	597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주 소 :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 63번길 77, 11동 301호
- 성 명 : 연 순 미

마. 사업 시행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 2016. 5. 3.

바. 관계도서 : 게재생략

운행정지명령 자동차 공고

자동차 소유자가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로 신고 및 자동차 운행정지 요청서를 제출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및 동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요청 등) 규정에 의거하여 운행정지명령을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운행정지명령 자동차 공고
2. 공고기간 : 2016.08.16. ~ 2016.08.31.(15일간)
3. 공고대상 : “운행정지명령 자동차 현황” 참조
4. 공고내용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에 따라 운행정지명령 받은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 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및 제82조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의문 사항은 고양시차량등록사업소 특별사법경찰팀 (☎031-8075-477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운행정지명령 자동차 현황 1부.

2016. 08. 16.

고양시차량등록사업소장

은행정지명령 자동차 현황

연번	자동차등록번호	차명	소유자	은행정지명령 사유	은행정지명령일자	비고
1	06가89*2	다이너스티3.0오토메틱백시	이*진	소유자 신청	2016.08.05	
2	39노63*6	에쿠스	선*호	소유자 신청	2016.08.05	
3	경기46거64*5	그랜저2.4	임*탁	소유자 신청	2016.08.08	
4	03버87*7	쏘렌토 GLS	김*호	소유자 신청	2016.08.09	
5	25너161*4	벤츠S550 4matic	채*찬	소유자 신청	2016.08.09	
6	39모85*4	프라이드	이*희	소유자 신청	2016.08.10	
7	경기37루43*0	스타렉스단축9인오토	구*연	소유자 신청	2016.08.10	
8	01고11*2	NEW 그랜저XG	장*원	소유자 신청	2016.08.11	
9	경기37루46*0	무쏘	구*연	소유자 신청	2016.08.11	